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1.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고, 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 ----- ----- ----- <u>2023년 12월 31일</u>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한시정원) ① (생략)	제55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③ ----- ----- ----- ----- <u>2023년 2월 28일</u> ----- ----- -----.
④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④ ----- ----- ----- ----- <u>2022년 12월 31일</u> ----- -----

둔다.

⑤ ~ ⑩ (생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